

의안번호	2207942
의 퇴 인	전현희의원
회 답 일	2025.3.14.
추계번호	25D06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9억 3,100만원, 2030년 103억 8,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2억 8,300만원(연평균 100억 5,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수사처 정원 확대 (안 제8조제2항 등)	9,931	9,795	9,987	10,183	10,383	50,280	10,056
수사처 검사 적격심사 (안 제14조의2제1항)	-	-	-	1	2	3	0.6
합 계	9,931	9,795	9,987	10,184	10,385	50,283	10,057

주: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 결과이므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수사처검사) 제2항	수사처 검사의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	-
2	안 제10조(수사처수사관)제2항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을 현행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
3	안 제11조(그 밖의 직원)제2항	수사처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
4	안 제14조의2(수사처 검사 적격심사) 제1항 신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 마다 적격심사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조(수사처검사) 제2항	○	-
2	안 제10조(수사처수사관) 제2항	○	-
3	안 제11조(그 밖의 직원) 제2항	○	-
4	안 제14조의2(수사처검사 자격 심사) 제1항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기본경비에 한정하여 추계하고, 사업비와 임차료 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정¹⁾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5년으로 함

1) 개정안에 따른 공수처 사업의 확대는 없는 것으로 하고, 65명의 증원인력을 위한 사무실 공간은 수사처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4.10. 기준)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공무원 신규채용 기관부담률	13.21	13.31	13.4	13.49	13.58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6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5,010천원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수사처 정원 확대(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 개정안은 수사처의 검사를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수사관을 현행 40명에서 60명으로,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임

－ 검사 25명, 수사관 2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총 65명 증원

□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기본경비에 한정하여 추계함

○ (보수)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의 각 1인당 보수에 각 증원 인원을 곱하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함

－ 2025년에 편성된 수사처 인력의 직급별 보수(연봉 및 수당)는 다음과 같음

[표 2] 수사처 인력 직급별 보수: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직급	정원(명)	보수(연봉 및 수당)
정무직		1	159,503
검사		23	2,853,740
수사관	4급	6	668,313
	5급	13	985,986
	6급	18	1,289,497
	7급	3	238,958
행정직원 등	고위공무원단	3	457,451
	3급	1	117,486
	4급	4	453,562
	5급	3	281,622
	6급	4	298,471
	7급	3	171,177
	전문경력관 나군	1	61,706
	별정직 5급	1	83,076
	연구사	1	73,278
계		85	8,193,826

주: 직급별로 책정되지 않은 명예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제외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증원인력의 각 직급별 인원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의 평균 보수를 적용함

[표 3] 수사처 인력 1인당 평균 보수: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정원(명)	총 인건비	1인당 평균 보수
검사	23	2,853,740	124,076
수사관	40	3,182,754	79,569
행정직원 등	21	1,997,829	95,13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관부담금) 위에서 산출한 보수에 기관부담 요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 증원 첫 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 501만원에 총 증원 인원(65명)을 곱함
 - (기본경비) 위에서 산출한 인건비에 2025년 수사처 예산 기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³⁾ 비율(29.7%)을 곱함
- 수사처의 정원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2억 8,000만원으로 예상됨

[표 4] 수사처 정원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검사(25명)	3,161	3,221	3,282	3,344	3,408	-
	수사관(20명)	1,621	1,652	1,684	1,716	1,748	-
	행정직원(20명)	1,939	1,976	2,013	2,051	2,090	-
	합계(65명)	6,721	6,849	6,979	7,112	7,247	34,908
기관부담금		888	912	935	959	984	4,678
자산취득비		326	-	-	-	-	326
기본경비		1,996	2,034	2,073	2,112	2,152	10,368
합 계		9,931	9,795	9,987	10,183	10,383	50,280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수사처 운영 총액 기본경비는 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상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고, 비총액 기본경비는 수사처 업무 수행, 기관 유지 등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임.
수사처의 총액 기본경비는 개정안의 재정수반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비총액 기본경비로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산출함

나. 수사처 검사 적격심사(안 제14조의2제1항)

- 개정안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수사처 검사(처장, 차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 참석 수당임
- (민간위원의 수 및 수당) 현행과 같이 민간위원 총 5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함
 - 2024년 수사처 검사의 연임 심의 시, 위원 수당은 총 200만원[2회 x 민간위원 5명 x (1인당 수당 15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을 지급함
 - 현행 검사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적격심사 심의도 위와 같이 민간위원 1인당 20만원(2시간 초과 가정) 지급으로 가정함
 - (회의 개최 횟수) 적격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는 2029년에 1회, 2030년에 2회로 하여 총 3회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추계기간 동안 총 11명으로 예상되고, 같은 해 임용된 검사들의 적격심사는 같은 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되, 2023년 임용된 검사들은 2030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심사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수사처 재직 검사 임용일자(처·차장 제외)

연번	재직검사	임용일자
1	A	2021.10.28
2	B	2021.10.28
3	C	2021.10.28
4	D	2021.10.28
5	E	2023.2.24
6	F	2023.2.24
7	G	2023.2.24
8	H	2023.6.21
9	I	2023.9.27
10	J	2023.9.27
11	K	2023.10.24.
12	L	2024.7.22.

주: L검사는 추계기간 중에 임명 후 7년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수사처 검사의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수사처 검사 적격심사로 인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민간위원 수(a, 명)	-	-	-	5	5	-
민간위원 수당(b, 만원)	-	-	-	20	20	-
회의 개최 횟수(c, 회)	-	-	-	1	2	-
합 계(axbxc, 백만원)	-	-	-	1	2	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수사처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9억 3,100만원, 2030년 103억 8,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2억 8,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수사처 정원 확대	9,931	9,795	9,987	10,183	10,383	50,280
수사처 검사 적격심사 실시	-	-	-	1	2	3
합 계	9,931	9,795	9,987	10,184	10,385	50,2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